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(등록말소)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업체의 등록말소 사실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29일

경기도지사

상 호 / 대표자	소 재 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처분내용	처분사유	처분근거
성산프라임 건설(주) 오**	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장지로 30, 204호 (태영프라자)	건축공사업 17-0582	등록말소 (2020.11.20.)	건설업 등록기준 (보증가능금액) 미달로, 영업정지 처분 (2019.12.21.~ 2020.6.20.) 받은 후, 종료일까지 미보완	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